민법 일부개정법률안 (남인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53 발의연월일: 2020. 7. 2.

발 의 자: 남인순·홍성국·이탄희

박홍근 • 진선미 • 최혜영

조오섭 • 이수진(비) • 유미향

박성준 · 김영배 · 황운하

고영인 · 김승원 · 권칠승

김상희 · 박영순 · 권인숙

의원(18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 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,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을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.

그러나 아동·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는 주변인들이 가해 자인 경우가 많아 대리인을 통한 권한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을 고려해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미성년자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 구권은 피해자가 성년이 된 때부터 1년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 록 하여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스스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성폭력범죄로부터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 를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180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0조의2(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 시효정지) 미성년자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 상청구권은 그가 성년이 된 때부터 1년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 니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18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적자기결 정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경우로서 피해자가 미 성년인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80조의2(성적자기결정권 침해
	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
	<u>구권과 시효정지) 미성년자의</u>
	<u>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원인으</u>
	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그
	가 성년이 된 때부터 1년 내에
	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.